
입 법 정 보

2018-1호



목 차



1. 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안) (법무부)	6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
3.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7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7
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8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8
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9
8.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
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
1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3.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3
14.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3
15.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4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고용노동부)	15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5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16
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16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7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8
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9
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
2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0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1
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1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22
2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3
3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4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4
3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5
3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5
3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6
3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7
36.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7
37.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28
3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29
39.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30
40.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1
4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1
4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43. 교과용도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3
4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4
4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5
4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5
4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법무부)	36
4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법무부) ····	37
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7
5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7
5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8
52.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9
5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9
54.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0

5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1
56.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2
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2
58.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3
5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5
6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6
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7
6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8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9
64.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50
6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53
6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57
67.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61
68.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62
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4
7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65
7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66
7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6
7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67
7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68
7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	69
76.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69
77.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70
78.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1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72
80.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73
8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73
8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73
8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74
84.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75
85.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76

8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국토교통부)	77
87.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79
88.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79
8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80
9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80
9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81
9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81
9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82
9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82
9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83
96.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84
9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84
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86
99.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86
10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87
1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88

정부입법 예고

1. 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2. 26.
- 마감일자 : 2018. 02. 05.

-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활동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성근무복 및 근무화 등의 종류를 추가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타나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안 제2조)
현행법이 교정직렬 공무원만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렬의 공무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 나. 교정제복의 탄력 적용(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여성·소년·중간처우 등 전담 교정시설에서의 기동장(裝) 차림새의 탄력 적용 및 수형자 교화·사회복귀·재활·심리치료 등을 위해 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 사복을 착용 할 수 있도록 함
- 다. 기능성 제복류 신설(안 제5조)
기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한 기능성 제복류(기능성 여름셔츠, 카디건, 교육훈련복 등) 신설
- 라. 국가기술표준원 규격에 맞게 소재·도식·용어 개선(별표1부터 별표8까지)
제복별 소재·도식·용어를 국가기술표준원의 규격에 맞게 명확화하고, 신설된 제복류에 대한 제식 및 도식을 추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26.
- 마감일자 : 2018. 02. 07.

- 화물의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승차정원이 5인 이상인 일부 화물자동차가

영업용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사용한다는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하여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적재면적 및 승차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3.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26. ● 마감일자 : 2018. 02. 05.
- 철도분야 운행선 작업자의 사망사고 등 작업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자의 관행개선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입환작업계획서 관련(안 제39조)
입환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순서·작업자별 역할 등을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이행여부를 하는 규정을 신설
 - 나. 돌방입환 관련(안 제44조제1항)
돌방입환 시 작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승하차하는 행위가 수반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차량 고장의 일부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 다. 입환 전호 방식 관련(안 제10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입환 작업 시 전호 방법이 관련 규정 간 기본 원칙이 상이하며, 무선전호기 사용시 무선이 끊기거나 채널이 혼선되어 작업자가 현장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작업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전호를 원칙으로 규정함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26. ● 마감일자 : 2018. 02. 05.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3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안 제31조 개정)

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2. 26.
- 마감일자 : 2018. 01. 15.

○ 교사(校舍)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교실에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안 별표4의2)

1)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으로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고,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 실시 의무 부여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2. 27.
- 마감일자 : 2018. 01. 08.

○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 자율화의 일환으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현황의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의 실 국 설치를 허용하고 과 설치를 자율화하는 한편, 인구 10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실 국 설치기준 및 실 국장 직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리 자율화(안 제4조 제40조)

- 1)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 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사용할 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제도가 개선 추진됨에 따라 이와 연계 운영되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폐지
- 2) 정원 자율화에 따른 인력운용 방만화 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한 해당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함

나. 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의 실 국 설치 허용, 과 설치기준 폐지(안 별표3)

- 1) 그간 실 국 설치가 제한되었던 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에 대해 1~3개 범위 내 실 국 설치 허용
- 2) 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의 실 과 담당관 설치기준 폐지, 자율 설치 허용

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직급 기준의 탄력성 확대(안 별표3)

- 1) 3 4급 실 국장 직위 설치 범위를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단, 인구 120만 명 이상 시는 4명)
- 2)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4 5급으로 임명 가능토록 함

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급 기준 개선(안 별표2 별표3 별표7)

- 1) 인구 10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의 실 국 설치기준을 1개 확대(1~3개 ⇒ 2~4개)
- 2) 인구 7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읍의 과장을 2명의 범위에서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단, 4급 읍장이 통솔하는 읍의 경우로 한함)

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12. 27.
- 마감일자 : 2018. 02. 05.

○ 직장내 성희롱 비위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하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등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직장내 성희롱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예방 및 대책차원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나.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통해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다.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시 고려토록 함

8.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12. 27.

● 마감일자 : 2018. 02. 05.

○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위촉 범위를 제한하고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를 강화하며,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에 안내하도록 하고, 징계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징계기준을 제정하거나 폐폐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범위를 제한

퇴직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

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 설치시 근거를 명확화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관할·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다.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

감사원에서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 신청 근거를 마련함.

라.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토록 안내문구를 신설함.

마. 각 부처 자체 징계기준 마련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의무화

각 부처에서 징계기준·감경·비위사건처리기준 관계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함.

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12. 27.
- 마감일자 : 2018. 01. 03.

- 국립세종수목원 및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 기간을 2018년 1월 27일까지에서 2020년 1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산림협력 업무를 산림산업정책국에서 국제산림협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하부조직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민북지역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양구국유림관리소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로 개편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 직군 정원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으로 전환하고,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 3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27.
- 마감일자 : 2018. 02. 05.

- 건설기술 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14848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행정처분기준 추가(안 별표6)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부터 바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추가

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27.

● 마감일자 : 2018. 02. 05.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함

1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27.

● 마감일자 : 2018. 01. 18.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분리심의 대상 건축물을 규정
(안 제13조의4 제2항)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건축물의 통합심의가 아닌 분리심의가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 용도 또는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분리심의 대상 건축물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주 용도가 교통 시설인 건축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 건축물”로 규정함

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13조의6)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재 10명 이상 4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으로 상한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산업단지재생사업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단지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단지 내 개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특수 항만을 제외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조치함.

13.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2. 27. • 마감일자 : 2018. 02. 05.

○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민주적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 제한 비율을 폐지하고, 학교공모교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과 외부의원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2조의5제2항)

현행 학부모 위원의 참여뿐 아니라 교원과 외부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 제한 비율 폐지(안 제12조의6제2항)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한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14.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12. 28. • 마감일자 : 2018. 02. 06.

- 국정과제로 채택된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위하여 보조항로의 지정 요건을 확대하여 적자항로,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개조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조항로 지정 요건 확대(안 제9조)

기존 보조항로의 요건인 “항로단절” 과 국정과제인 준공영제 확대에 따른 “적자항로”,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을 포함하고 세부 사항은 별도 고시하도록 규정

나. 보조항로 확대에 따른 경쟁입찰 대상 조정(안 제10조)

기존 보조항로는 경쟁입찰로 진행되나, 확대되는 보조항로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여 경쟁 입찰이 불필요하므로 대상이 기존 보조항로에만 해당함을 명시

다. 보조항로 확대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급 방식 조정(안 제11조)

기존 보조항로는 분기별 분할 지급하나, 확대되는 보조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 정산에 따른 운항결손액 산정이 필요하므로, 분할 지급의 필요시 일괄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

라. 친환경선박으로 개량 개조 시 지원대상 포함(안 제17조)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중고선박을 수입할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개량·개조 시에도 정부가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추가

15.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2. 28.

● 마감일자 : 2018. 01. 18.

-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

규칙 제83조의3)

(1) 폭발물처리사 : 폭발물처리사, 폭발물처리사(보)

(2) 국방사업관리사 : 1, 2, 3급

나.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2. 28. • 마감일자 : 2018. 02. 06.

○ 사업주는 법 제1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근로자별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면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을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동일한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 전보 근로자 누락 및 중복 가능성이 커 정확한 고용보험료 산정·부과가 어려운 점이 있어 정확한 고용보험료 산정·부과를 위해 전보 근로자의 근무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2. 28. • 마감일자 : 2018. 02. 06.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단계적 지급 확대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고자 함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2. 28.
- 마감일자 : 2018. 02. 06.
-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나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2. 28.
- 마감일자 : 2018. 02. 06.
- 주요내용
 - 가. 65세 이상 실직자의 실업급여 단계적 수급 확대(안 제10조제2항)
현재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65세 이후에 취업한 후 실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어도 65세 이후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
 - 나. 초단시간 노동자 기준기간 연장(안 제40조)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노동자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기준기간(이직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노동자의 기준기간을 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및 하한액 조정(안 제46조, 제69조의5)
생계부담 완화를 통한 실직자의 안정적 재취업 활동 보장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자영업자도 지급수준을 기준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함.
 - 라.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안 제50조제1항 [별표 1], 제69조의6 [별표 2])
소정급여일수의 연령별 구분을 ‘30세 미만 - 30 ~ 50세 미만 -

50세이상' 에서 30세 미만 구분을 폐지한 '50세 미만-50세 이상'으로 하고, 모든 구간을 30일 연장하여 120 ~ 270일로 개선함
자영업자도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여 120 ~ 210일로 개선함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소방청)

- 예고일자 : 2017. 12. 29. ● 마감일자 : 2018. 02. 07.
- 부실설계 방지 및 설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시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제출 의무화(안 제4조제2항제5호)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제5항 ~ 제7항 신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강습교육 접수증을 첨부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기간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 라. 소방시설관리업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5조제2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함.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7. 12. 29.

● 마감일자 : 2018. 02. 07.

- 전통시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산후조리원과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며, 건축물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초고층 아파트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법 개정(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제6호·제8호)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포함하여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 및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안 제15조의3)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성능위주의 설계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강화(안 제24조제1항제9호)

- 1)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2017.2.4. 사망4, 부상 14)를 계기로 건축물의 용접작업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2)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서에 특정소방대상물의 화기작업시 사전승인 및 안전조치 등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라. 전통시장 중 중대형·대형 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안 제24조의2제1항)

- 1) 소방청장이 관리 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통시장이 추가 (2017.12.26. 공포, 2018. 6.27. 시행)됨에 따라
- 2) 전통시장 중 중대형·대형 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 1)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변경함
사.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규정(안 별표 2)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던 병설유치원과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던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게 소방
시설을 설치토록 함

아. 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함(안 별표 5)

1)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신고 시스템 개선 및 화재확산 방지 대책 강구 필요

2)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2. 29. • 마감일자 : 2018. 02. 07.

○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71호,
'17.4.18. 공포, ' 18.4.19.시행)됨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위임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
(안 제19조~22조)

나. 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세부사항 정비 (안 제
23조~26조 및 제55조)

다.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관련 서식 수정 (안 별지
제6호~11호 서식)

라.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표시사항 간소화(안 별표1)

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2. 29. • 마감일자 : 2018. 02. 07.
-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71호, ‘17.4.18. 공포, ‘18.4.19.시행)됨에 따라 연구위원의 자격, 업무 등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 참석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 나. 연구위원의 인원 수 업무 자격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다. 연구위원의 여비 및 연구비 등 수당 지급 규정 추가(제8조)

2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2. 29. • 마감일자 : 2018. 02. 07.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내용 중 공정가액 평가대상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환산기준 신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정의 보완, 우발상황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 등 타 회계기준과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환율 규정을 신설하고, 환율변동효과의 인식 기준 및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정의 명확화(안 제47조)
 - 나. 우발상황, 우발이익 및 우발손실 용어를 삭제하고, 충당부채, 우발부 채 및 우발자산 용어를 신설하여 인식 및 측정기준 규정(안 제50조)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29. • 마감일자 : 2018. 02. 07.

- 주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주된 공익사업과 통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상대상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주대책 통합 실시 근거 마련

부수적인 공익사업 시행자는 주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이주대책부득이한 사유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01. 03.
- 마감일자 : 2018. 02. 1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01. 03.
- 마감일자 : 2018. 02. 12.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하고,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입찰보증서 발급기관과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체가 수수료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시키는 한편,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인 경우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함.

나.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제1항제6호 라목4)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의 경우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및 이를 상용화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방재신 기술의 경우 상용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 방재신기술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입찰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안 제37조제2항 제4호서목 신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가 보증사업이 가능하므로, 위협회를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하여 공간정보산업 회원사들이 동 협회의 보증을 통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손해공제 포함(안 제55조제1항)

건설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는 손해 보험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손해공제사업을 포함하여 업체가 보험료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8. 01. 03.
- 마감일자 : 2018. 02. 12.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가산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고용지원금 및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금 등을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5)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있는 배우자 대상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4호 서식)
현재 서식상 신청인 제출 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함.

다. 가산금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6호 서식)

가산금 지급신청서의 가산금 지급사유에 ‘제3국 출생 자녀 양육’을 포함하고, 신청인 제출서류의 종류를 명시함.

2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01. 03.

● 마감일자 : 2018. 02. 12.

○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로 법령 정비

○ 주요내용

가. 공유림등의 매매·교환계약서 작성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
(안 제19조제3항, 안 제22조제2항)

나. 별지 서식 개정

3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01 03.

• 마감일자 : 2018. 02. 12.

-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등이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8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만원 이하 소액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2017. 3. 3. 시행)과 형평성 유지

○ 주요내용

가. 소액 대부료의 통합 징수(제21조제4항 신설)

국유림을 대부등을 한 경우 해당 대부등의 기간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연간 대부료등을 20만원 이하로 함

나. 타법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 정비(제22조제1항중 항목정비)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 제27926호, 2017.3.3.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고일자 : 2018. 01. 04.

• 마감일자 : 2018. 01. 0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공동구의 설치·관리, 건축물에 대한 미술품 설치,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등의 자치사무가 2018년 1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3명을 감축하는 한편, 대학·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을 2021년 1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도 직제 개정에 맞춰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음.

3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01. 04. ● 마감일자 : 2018. 02. 14.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 일몰 도래한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사후 분석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의7)
 -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일몰조항) 삭제(제32조 삭제)

3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01. 04. ● 마감일자 : 2018. 02. 14.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 추가 및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현실화 등 일부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안 제8조)
 -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사후분석 평가 대상사업을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사업으로 규정(안 제12조의3)
 - 다.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을 타 신기술 보호기간 수준으로 연장(안 제52조)

3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01. 04.
- 마감일자 : 2018. 02. 13.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추가되어, 지정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기준 방법, 시험·검사의 절차, 지정요건, 행정처분, 서식 등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운용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 1)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와 시험·검사의 분야·품목 및 항목에 위생용품 추가(안 별표 1 제6호)
 - 2)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표 2 제6호)
 - 3) 시험·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추가(안 별표 5)
 - 4) 지정·재지정·변경 등 신청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5의2호서식)
 - 5) 시험·검사성적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3호서식)
 - 6) 시험·검사 실적보고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3의 2호서식)
 - 7)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7호서식)
- 나.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4호서식)
- 다. 교육기관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8호 서식)

3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01. 05.

• 마감일자 : 2018. 02. 14.

- 다문화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및 관리 방안을 마련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 통보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를 개선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 를 추가하여 보호시설 아동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방안 구체화(안 제3조)

외국인 배우자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대상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속할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외국인등 본인이나 세대원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함

나.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관리 방안 구체화(안 제3조의2, 제7조제1항)

외국인등이나 외국인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세대원이 전입신고(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함
다. 등·초본 교부 수수료의 면제 대상 확대(안 제19조제2호)

보호시설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본인이 등·초본 교부를 신청 및 위임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에 대한 수수료의 면제 조항에 ‘미성년자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포함’ 을 추가함

36.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01. 05.

• 마감일자 : 2018. 02. 1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제사업 인가를 받음에 따라 선원의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을 보장하

기 위해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를 추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을 목적으로 소속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을 추가함(안 제18조의3 제6호 신설)
- 나.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재해보상 보험·공제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소속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를 추가함(안 제32조 제5호 신설)

37.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8. 01. 05.
- 마감일자 : 2018. 01. 08.

- 금품·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한 시민단체 근무경력 관련 호봉경력 인정제도 정비 및 군무원인사법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 (안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고위공무원단 등은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 나.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안 8조)
 -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 임용등에 따른 초임호봉확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확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 금품수수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시

-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4조)
- 라.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직종변경 사항 반영(안 제30조의4, 별표12)
 - 군무원인사법 개정 관련 한시임기제군무원 신설에 따른 적용규정 마련
 및 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 폐지사항 등을 반영함
- 마. 공직개방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경력을 호봉경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환
 산율표를 조정함(별표 16, 별표17, 별표19, 별표22)

3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8. 01. 05.
- 마감일자 : 2018. 01. 08.

○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안 제11조의3 제5항)

- 1)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단축된 시간에 비례 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월봉급액의 60퍼센트’
 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로 인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간의 인상 내용과 형평 유지

나.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 사기진작(안 별
 표 9, 별표 11)

- 1)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업무 전담자에게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 2) 최전방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하사 및 8·9급 군
 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 3)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도로현장근무, 과적 단속업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지급 등

다. 특수·전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현실화(안 별표11)

- 1)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기술속도 변화에 따른 특허 심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심사·심판관(보)에 대한
 수당 현실화
- 2)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 대상 상담을 위해 배치된 전문
 상담(순회)교사에 대해 특수업무 수당 가산금 지급 등

라. 군인 기본급 통합 및 군무원 직종개편 관련 규정 정비 등(안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의5, 별표 12, 별표15, 부칙)

1) 군인의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보상비,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비를 조정

2) 군무원 직종개편 관련사항 수당규정 반영 등

39.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01. 05. ● 마감일자 : 2018. 02. 14.

○ 소방관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인력 산정방식에서 인구, 출동거리, 소방대상물 등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력 산정기준을 도입하여 소방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소방간의 업무연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조직모델을 제시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력 기준 대상의 확대 및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1)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소방안전체험관, 119종합상황실, 본부 직할구조대(대테러구조대)에 대한 인력산정기준 마련

2) ‘소방기관’의 범위에 “소방안전체험관”, “119종합상황실”, “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를 추가하고 소방인력 산정기준 도입

나. 소방서 근무요원 배치기준 정비(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1) 조직 구성원간의 위화감 감소를 위해 “간부”를 “지휘·감독요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소방서 행정요원을 “행정지원·대응·예방요원”으로 간소화(방호 및 구조·구급요원을 대응요원으로 통합)

2) “현장활동요원”의 범위에 국민접점서비스인 소방특별조사요원과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요원을 추가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현장대응요원”으로 규정

다. 소방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화 및 인

력 산정기준 도입(안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별표 2, 별표 3)

1) 대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최소 전술단위 필수 인력 및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별 인력 산정 기준 마련

2) 중앙과 지방소방간의 업무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소방기관의 하부 조직 명칭 및 사무분장 표준화

라. 기타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화 등 소방력기준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소방청훈령) 제정

40.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01. 05.

• 마감일자 : 2018. 02. 14.

○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가 안전수칙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23조제2항제12호 및 안 제124조의3 신설)

타워크레인 조종이력, 설치·해체작업 및 인상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작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영상을 기반으로 사고원인을 파악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4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01. 05.

• 마감일자 : 2018. 02. 14.

○ 고층 건물 공사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데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16년부터 급증하는 추세이며, ’ 17년에도 타워크레인 대형 인명 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타워크레인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연식에 비례한 관리 강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바), 안 별표8 제5호하목(12)(사)신설 및 안 별지 20)

(1) 야외(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날씨에 영향을 받아 구조물에 부식이 발생하는 등 연식에 비례하여 기계적 강도가 하락하며, 바람 및 인양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으로 피로파괴의 우려 또한 높으므로, 연식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필요

(2) 제작일로부터 10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는 정기검사시 주요 부품에 대해 검사대행자의 안전점검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제작일로부터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정기검사시에 제출토록 함

나.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아) 및 안 별지 20)

(1) 규격외 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비이력 및 자체점검 내역을 정기검사시에 확인하여 운용중인 타워크레인의 적정부품 사용여부를 확인할 필요

(2) 최소 3년 이내의 정비이력 및 자체점검 내역을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다. 영상장치 설치 및 기록제출 의무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자) 및 안 별지 20)

(1) 타워크레인 조종실에 설치되어 조종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과 해당 영상의 저장여부, 설치 및 해체 작업자의 눈높이에 설치되어 설치·해체시를 촬영한 영상을 검사 시에 제출토록 하여, 각각의 주체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혹시 모를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만약, 사고발생시에는 영상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밝혀진 사고원인을 기반으로 재발할 수 있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

(2) 타워크레인 검사시에 조종실의 영상촬영, 저장여부 및 설치·해체시의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도록 함

라. 조종사 면허 취소기준 상향(안 별표22)

건설기계 조종사가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취소되는 기준을 사망 3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로 개정

마. 타워크레인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23)

(1) 타워크레인 검사에 전문자격을 갖춘 검사원이 투입되도록 수수료 현실화 필요

* 현재 조선소 등 산업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는 102,000원→160,000원으로 인상('18년부터)되었으나,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는 '08.2월 이후 동결(85,000원)

(2)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를 산업현장과 동일하게 적용

4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01. 05. • 마감일자 : 2018. 02. 14.

○ 수입 타워크레인의 경우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사실 증명서류를 통해 연식을 확인토록 되어 있어 연식을 허위신고 할 경우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연식확인 절차 강화 필요

○ 주요내용

가. 수입 타워크레인 등록서류 추가(안 제3조제1항)

건설기계 등록 제출서류 중 ‘건설기계제작증’을 기존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로 한정된 것을 수입 타워크레인 까지 제출 의무 확대

4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01. 05. • 마감일자 : 2018. 01. 25.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하여 교육 재정과 가계 부담 완화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 중인 가격 조정 명령 제도를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출판사의 가격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부과(안 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 나. 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를 삭제하여 가격 조정 명령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33조제2항 개정)
- 다. 가격 결정 대상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 중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 명령 대상 도서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안 제33조제2항 제4호 내지 제8호 신설)

4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01. 05.
- 마감일자 : 2018. 02. 14.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에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 상이 급여금 지급 기준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민간위원 참여(안 제36조의2)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도록 함.
- 나.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 다.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4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2. 19.

○ 신규 지방공무원이 보직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대상에 임용후보자 포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 신규 공무원의 보직전 기본교육 이수원칙(선교육 후배치) 정착을 위한 취지이며, 임용과 동시에 보직부여로 교육기회를 놓치는 인사관행을 없애기 위함

나.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안 제 38조 신설)

- 집합·사이버교육, 교육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2. 19.

○ 노후·불법 LPG용기를 쉽게 발굴·수거할 수 있도록 용기 색상을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하고, 용기 각인을 중요정보 위주로 간소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기준 삭제(안 별표 8 제3호)

-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기준에 대한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이 「자동차관리법」 이관에 따른 관련 기준 삭제

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대한 불필요한 각인 내용 삭제(안 별표 24 제1호가목4)·8))

- 내용적과 내압시험에 대한 각인 표시를 삭제
- 다.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채를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안 별표 24 제1호나목1))
- 재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쉽게 발굴·수거로 불법적인 유통 근절 등

4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2. 19.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수수료를 감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안 제17조의3)
 - 성폭력 행위 또는 성폭력 피해자 강제해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용주가 초청하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나. 관광상륙허가 적용대상 선박 요건 완화(안 제24조의2)
 -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양 국가만을 운항하는 경우에도 관광상륙허가 적용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 다.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용어 변경(안 제47조)
 -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 가족 사항’으로 변경함.
-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평가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53조의12)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

에서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감경(안 제74조제2항)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근무처변경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온라인 신청시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함.

4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2. 19.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에 따른 관계기관의 기록정리 및 관리 절차,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요건 및 반납 절차 등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요건 및 반납 절차와 그 성격이 다르지 아니함에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2. 19.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업투자(D-8) 자격 요건 중 학력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18세 이상 외국인은 비전문취업 (E-9) 자격으로 취업이 가능하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려면 25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그 요건을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외국국적동포의 방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2. 19.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위원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관련 업무 등이 계속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을, 6개 부처 장관급 위원에서 4개 부처 국장급 위원으로 조정함(안 제2조).
 - 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간사와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5조).
 - 다.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5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2. 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17.4.18)에 따른 대기업 기준 변경 및 기술료 징수 공통기준 개정(‘12.5.14, ’ 15.12.22), 국회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유형에 따른 기술료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료 조기납부 유도를 위해 납부시기에 따라 기술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17.6.27. 시행)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수산물 관련 사항 삭제)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변경(안 제14조제1항제2호)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료 감면 대상에서 어업분야를 제외하고자 함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을 기술료 감면대상에서 삭제하고 기업유형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정비(안 제14조제1항제3호~제5호)
 - 국회지적 및 대기업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기술료 감

면조항을 삭제하고, 타부처 사례를 감안하여 중견·중소기업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다. 기술료를 3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4조제2항)

○ 기술료 조기납부 유도를 위해 타부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기술료 추가 감면기간을 조정하고 감면율 등 세부기준은 훈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라. 상위법령의 ‘징수한 기술료 사용’ 조항 삭제에 따라 해당 위임 조항 삭제(안 제15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제2항의 ‘징수한 기술료 사용’ 조항 삭제에 따라 해당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자함

52.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19.

○ 법 개정으로 합동사무소의 경우 소속 관세사 수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소속 관세사가 상근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하도록 함

5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19.

○ 주요내용

가.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전심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나.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승인을 얻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되는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54.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19.

- 재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해외 카드 사용 인출 내역 통보 대상을 확대 등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장부등 임의 보관하는 절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록 시 신고 사항을 추가하고,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명확하게 함
- 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시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설정함
- 다.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만 사전조정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한 법률개정의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국세의 사전조정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물품 가격산출내역 등 내부가격결정자료,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등으로 명확하게 함
- 마. 관세관련 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위원의 해임 해촉 사유 및 회피의무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바. 관세가 감면되는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 하지 않는 경우는 전량 사용되는 날까지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연장기간을 명확히 함
- 사.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시 장부등을 일시보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모두 반환하도록 함
- 아.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 통지 의무, 재조사의 연기 연장 중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자. 현재 관세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인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요건 불충족, 물품반입이 정지된 경우, 보세사가 아닌 자가 직무수행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
- 차. 보세운송업자 등록시 운송수단의 종류 명칭 번호를 세관장에게 추가 신고하도록 함
- 카. 관세청장은 무기의 사용, 관리, 보관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록 하도록 함
- 타. 개항(보세구역 포함)에서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보세구역 운영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파.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건 당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또는 인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자료를 매일 관세청장이 통보 받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 제출 대상 및 제출 주기를 확대함

5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29.
-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금 지급자료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의 보고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6.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19.
-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세무사징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이 상시 참석하도록 하고 기재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확대함
 - 나. 국세청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29.
-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과태료를 인상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신설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하여 신고대상을 확대함.
 - 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 다.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
 - 라. 다국적기업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을 제외하고 조정소득금액을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 차감 전 소득금액으로 함.

마. 다국적기업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을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 소득에 10% 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 공제를 부인하도록 함.

58.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19.

○ 주류의 첨가재료를 확대하여 다품종·고품질 주류개발을 지원하고,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맛의 주류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의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세 부담을 경감하며,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 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확대하며,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하고, 쌀 소비 증진을 위해 쌀 함량이 2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추가하여 경감하는 한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품종·고품질 주류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품질, 식품위생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주류 첨가재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상 허용기준 등을 감안하여 확대함.

나.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한편, 소매점 유통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상가격으로 함.

다.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의 과세표준 경감

1)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

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40퍼센트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100킬로리터 초과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곱하며 그 다음 출고된 300킬로리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40퍼센트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곱하며 그 다음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 2) 직전 주조연도를 기준으로 3천킬로리터 이하의 맥주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가격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70퍼센트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7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 3)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80퍼센트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 라. 쌀 소비 증진을 위해 맥주의 제조시 쌀의 사용중량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3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 마. 주류 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바. 소규모 맥주의 제조장 시설 중 담금 및 저장조의 용량 상한을 종전의 75킬로리터 미만에서 120킬로리터 미만으로 확대함.
- 사.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

가·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함.

5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29.
-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이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조정됨에 맞추어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조정
-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3원에서 3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원에서 33원으로 각각 조정

6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29.
-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와 발농사용 멀칭종이를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에 추가함.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피드스프레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등 일부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29.

-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체납방지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체납 방지를 위해 법률 위임사항 등 신탁재산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의2, 안 제21조의2)

- 1) 물적납세의무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으로 함.
 - 2) 신탁 설정일을 「신탁법」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 등으로 규정함.
 - 3)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신탁계약으로 함.

- 나. 업종 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함.(안 제14조제2항)

- 다.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추가함.(안 제26조제2항)

- 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35조)

- 마.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 20.12.31. 까지 연장함.(안 제37조)
- 바.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환전업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도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 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 관리·운용 사업을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안 제40조제1항제7호)
- 아.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제회원 모집 등의 공제대리 업무를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안 제40조제1항제19호)
- 자.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안 제46조제3호가목)
- 차.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국가 등이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46조제3호다목)
- 카.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8조)
 -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
 -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함
 -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함.
- 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정비하고 신청절차를 마련함.(안 제72조)
 -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함.

2)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

파. 국고보조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됨을 규정함.(안 제81조)

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해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자료제출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21조)

6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29.

○ 2017.12.13.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안 제3조)

1) 2017.12.13.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4.1. 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고, 2018.3.31.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함

2) 임대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임대기간 중에 멸실된 때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

나.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

산 배제 신설(안 제4조 제1항 제19호)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한 후 해당 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함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29.

-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적용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하고, 주식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하며, 상속세에 대한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일치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조정함.
- 나.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하도록 확인기관을 변경함.
- 다. 주식보유한도 20%를 적용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 출연 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과 자선 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의무 지출해야하는 비율을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함.
- 라. 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 마.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영농 종사 여부를 판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계산함.
- 바.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우대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수관계법인과 매출액에 포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 거래 등 범위를 규정함.

사.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정산증여의제 이익에서 차감함.

아. 장애인 신탁 재산에서 의료비 등을 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 인출 금액의 용도 및 원금인출 신청절차를 규정함.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액은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함.

차.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함

카.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요건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신설하되, 새로이 신설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업폐지 등의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취소하도록 함.

타.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물납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부분은 비상장주식 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파.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기한은 현재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3월인데, 이를 각각 3개월 연장함.

64.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29.

- 합병·분할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며,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분할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정하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등

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장학·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과세 제외 대상에 추가함.
- 나.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신설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라.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장학·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함.
- 마.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별도 지정기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은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되,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지정·고시하도록 함.
- 바.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 함.
- 사.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공시,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추가함.
- 아.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자. 법정·지정 기부금단체의 지정횟수(연 4회), 지정시기(매분기말일), 지정방식(고시)을 일원화 함.

- 차.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일수 비중을 곱한 금액을 2017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공동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를 추가함.
- 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취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 파. 합병 분할시 합병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이상을 승계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임원,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사망 상해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등을 제외함.
- 하.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하여 근로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 분할시 고용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함.
- 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약정 등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법인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 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평가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사를 추가하되, 감정가액이 5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함.
- 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내국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과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으로 규정함.
- 러. 외국법인이 100분의 5이상 소유한 상장주식 양도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함.
- 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제출 거짓제출한 경우 미제

출 거짓제출 건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함.

6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29.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기준을 조정하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추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노부모봉양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봉양 합가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기한을 연장하며, 과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1과세기간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거주자 판정기준을 완화함(안 제4조 제3항)
- 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요건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17조)
- 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보험차익 계산 시 보험금의 범위에 보험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25조제1항)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생결합증권과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를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함
(안 제26조의3)

마.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1)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안 제37조의2 신설)

-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양도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제62조제2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함

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대상(안 제55조제1항제7호의2)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3) 수입금액의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항목(안 제144조제3항제4호 신설)

-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함

바.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6항제2호)

사.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안 제68조제2항 및 제3항)

아.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추정당한 상속세, 증여세 및 가산세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안 제80조)

자.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의 80%인 필요경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는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로 조정함.(안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차.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추가함(안 제118조의4)

- 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농업·임업 및 어업 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서 7억 5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1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타.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결정·경정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43조제4항)
- 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종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55조제4항, 제156조의2 제6항 및 제7항)
- 하. 세대원이 가정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안 제155조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 거. 상장주식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과 비상장주식등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등에 일반세율 20%가 적용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57조제1·2항 및 안 제167조의8제1항)
- 너. 비상장주식등을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021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7조제3항 및 안 제157조의2)
- 더. 비상장주식등의 기준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함(안 제165조제4항)
- 러.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으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규정함(안 제167조의3, 제167조의4)

며. 2주택 보유자(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3억원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에 취득하는 주택 등을 규정함(안 제167조의6, 제167조의10)

며.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167조의9)

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3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는 포함한다)에는 50퍼센트의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함(안 제167조의11)

어. 비거주자가 100분의 5이상 소유한 상장주식 양도시 과세되도록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함(안 제179조제11항)

저.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간 총 2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대가를 지급하고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지도록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207조의 10)

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기간 조정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안 제211조의2제2항)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함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조정(안 제211조의2제3항제2호)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에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로 조정함.

- 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추가함(안 별표 3의3)
- 터. 비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제출 거짓제출한 경우 미제출 거짓제출 건별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함(안 별표 제5호)

6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29.

-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 중대세제의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의 대상기업 및 근로자 요건, 고용중대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범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신설에 따른 기업소득 계산방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 및 고용창출형 중소기업의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예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이 상향 조정되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및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규정하고,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함
-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 라.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함.
- 마.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신주 투자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하도록 운용요건을 추가하며, 1인당 펀드 투자금액 한도를 3천만원으로 제한함.
- 바.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에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을 추가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범위를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으로 규정함.
- 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대상에서 비과세 되는 연간 2천만원 이내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제외함.
- 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 계산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총급여 1.2억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조정함.
- 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가 중견기업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규정함.
- 차. 고용증대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화 함.
- 카. 사회보험 신규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및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화 함.
- 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 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채권자의 채무로 확대함.
- 파.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따라 사업개시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하.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 대상자의 범위,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 거.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 상자의 범위, 산지의 범위, 자경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 너. 국세청장이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 입 요건에 놓어민 가입자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추가함.
- 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멸 대상인 징수가 곤 란한 체납액으로 재산가액의 140%를 제외한 체납액을 추가함.
- 러.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수유예 체납처 분유예대상자의 체납액 요건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용 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까지 확 대함.
- 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범위에 종교 인소득의 금액이 포함되도록 함.
- 버.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계산하고,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은 투자포함방식의 경우 100분의 65로, 투자 제외방식의 경우 100분의 15로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서.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 고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백만원에서 연간 2백만원(2019년도 및 2020년도는 3백만원)으로,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 도를 연간 1천만원에서 연간 5백만원(2019년도 및 2020년도는 750만원)으로 각각 조정함.
- 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규정함.

- 저. 「소방법」 폐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으로 규정하되,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함.
- 처.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기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을 추가함.
- 커.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기관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제외함.
- 터.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위해 공급받는 자, 공급일자 등을 매출대장에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 퍼. 1개의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를 2개 이상 사업장에서의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 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한 법률 개정사항 집행을 위해 경감세액 지급단체를 재단법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으로 하고, 미지급 경감세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신용카드업자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로 하고,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제외) 및 적용대상 사업자의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이자율(1%) 등에 대해 규정함.
- 노.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호텔 요건에서 숙박요금 인상 제한 요건을 전년 동기(분기) 대비 5% 이하에서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분기) 대비 10% 이하로 완화하고, 환급시 즉시환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도.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으로 중견기업이 추가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 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적용 받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수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현행 18원에서 12원으로 조정함.
- 모.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한도를 개인사업자는 120만원으로, 법인사업자는 150만원으로 확대함.
- 보. 조세특례제한법 제15227호 부칙 제61조의 종전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3억원)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사업지역으로 정함.

67.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29.
- 효율적인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세무서장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신탁법」상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등에서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를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효율적인 체납처분 집행을 위하여 지방청장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로 확대함.
 - 나. 체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서장이 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수익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 다. 효율적인 공매를 위하여 세무서장 및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관 등이 보유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법」상 수탁자

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증명서 발급시 제외하는 체납액에 추가하고, 수탁자가 물적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를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자료의 제공에서 배제되는 사유로 추가함.

68.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1. 29.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항을 추가하고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 사유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보완하고, 신설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액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때에 국세 충당순서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 표준 세액의 결정 경정 사유 및 수정신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정보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

나.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 및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한정하여 일시 보관이 가능한 사실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다. 부분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 사전 통지 항목에 부분 세무조사의 범위를 추가함.

라. 부분 조사가 가능한 사유에 법인이 자본거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및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마.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

하되, 기획재정부 및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전문 자격사단체 등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명문화함.

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 제출 지연 및 거부 하는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전까지 세무조사 일시 중지 등을 요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사.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수를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함.

아. 일정기한내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적용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자. 장기간 미수령한 10만원이하 소액 국세환급금 등을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 등의 충당 순서를 규정하고,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충당하도록 함.

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최초 회의 개최시 출석일시 및 장소의 통지 기한을 회의개최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연장함.

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시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불복 청구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 위원의 임명권자를 민간 위원의 위촉권자와 같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문화함.

파.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하. 탈세 제보 유인을 위해 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과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의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세분화함.

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를 국세정보공개 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채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로 추가함.

너.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인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를 추가함.

더. 국세청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범위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함.

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2. 19.

○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4948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입주승인 및 취소, 공익법인의 설립 등 같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행복도시법」이 개정(법률 제14948호, 2017. 10. 24. 공포)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일부 자치사무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운영하는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행복도시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관련 법률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안 제29조의3 신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공동캠퍼스의 구성요소와 동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함.
- 나. 공동캠퍼스 입주가능 연구기관(안 제29조의4 신설)
 - 공동캠퍼스에 입주가능한 국내외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함.
- 다. 입주신청 및 승인절차 등(안 제29조의5 신설)
 - 입주신청에 따른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서류 접수 및 입주승인 절차, 입주승인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라. 공익법인의 설립(안 제29조의6 신설)
 - 공익법인의 설립·등기와 정관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마. 입주승인 취소 등(안 제29조의7 신설)
 - 입주승인 취소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취소 대상자가 대학이나 외국교육기관인 경우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규정함.
- 바.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신설)
 - 공익법인 설립 전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공익법인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사. 법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일부 자치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삭제
- 아. 「행복도시법」 인용 조항 수정(안 제 12조, 제26조)

7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2. 19.
- 사문화된 국비유학 합격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국비유학시험 합격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근거 삭제(현행 제11조제2항)
- 1) 국민부담 완화 도모 및 사문화된 조항 정비를 위함

71. 국비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2. 19.

- 국비유학 저소득층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기능인 전형의 지원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 재직 중인 자에서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여 국비유학제도의 교육계층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타 법령 개정 반영 및 현행 법령의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국비유학 저소득층, 기술기능인 전형 지원대상 확대(안 제20조제4항, 안 제20조제5항, 안 제34조 제2항제1호 일부개정)

1) 국비유학 저소득층 전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국비유학의 저소득층 지원대상의 조건을 추가함

2)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자격 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수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국비유학(연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재직 중 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요건을 완화함

나. 타 법령 개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안 제 5조제 1항제3호라목, 안 제34조 제2항제1호가목 일부개정)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의 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7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01. 09.

• 마감일자 : 2018. 01. 12.

- 최근 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환경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후·대기·보건·화학을 총괄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환경정책의 기획·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자연환경의 이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산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실을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며, 환경부로 이관된 기후변화 대응기능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환경경제 및 환경기술 개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7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01. 09.
- 마감일자 : 2018. 01. 10.

- 종전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는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 「비영리미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그러나 「비영리미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제외함.

○ 주요내용

가. 직종별 연봉한계액의 인상 조정(안 별표 12, 별표 13)

-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여 총 보수의 2.6%(2급 공무원 이상은 2.0%)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나.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호봉경력 확대 인정(안 제8조제2항)

-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 획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금품 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 강화(안 제13조제1항)

- 금품수수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함.

라. 장기교육훈련 파견자 성과연봉 지급기준 별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38조제3항)

- 10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7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8. 01. 09.

• 마감일자 : 2018. 01. 10.

- 종전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는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 「비영리미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그러나 「비영리미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제외함.

○ 주요내용

가.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 (안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고위공무원단 등은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나.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안 8조)

-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획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금품수수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시 승

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4조)

라.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직종변경 사항 반영(안 제30조의4, 별표 12)

- 군무원인사법 개정 관련 한시임기제군무원 신설에 따른 적용규정 마련 및 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 폐지사항 등을 반영함

7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01. 09. • 마감일자 : 2018. 02. 19.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13조제6항)

-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 배제를 위하여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해촉 근거 신설(안 제14조)

- 위원이 안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안전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해촉근거 규정 신설

76.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01. 09. • 마감일자 : 2018. 02. 19.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하 ‘화상공증’)이 가능하도록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화상공증 방식으로 전자화문서에 인증 부여할 수 있도록 촉탁인의 전자화대상문서 제시 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화상공증 시 지정공증인이 진행 상황을 녹화한 자료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

하도록 규율하고 전자공증 결과물의 전달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화상공증 방식으로 전자화문서에 인증 부여할 수 있도록 촉탁인의 전자화대상문서 제시 방법 추가(안 제7조 제2항)
 - 화상공증에도 적합하도록 전자화문서 인증의 경우 촉탁인이 전자화대상문서를 우편 등을 이용하여 지정공증인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
- 나. 지정공증인의 녹화자료 시스템 등록 의무 규정(안 제8조 제2항)
 - 공증인법 제66조의12에 의하여 화상공증 시 녹화된 영상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공증인이 녹화파일을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다. 전자공증 결과물의 촉탁인 전달 방식 추가(안 제8조 제3항)
 - 화상공증에도 적합하도록 지정공증인이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를 촉탁인에게 전자메일로 송신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촉탁인이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

77.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01. 08.
- 마감일자 : 2018. 02. 19.

-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를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하 ‘화상공증’)을 위하여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며, 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정하는 등 「공증인법」 개정에 따라(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외대상인 경미한 사항 규정(안 제37조의3 제2항 신설)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지배인 선임·해임 등을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

정함

나. 화상공증에 필요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설정(안 제38조의3 제2항 신설)

-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기 위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다. 화상장치를 이용한 촉탁인·대리인 본인확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8조의3 제3항 신설)

- 화상장치를 이용한 인증 시 신원확인 절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 화상장치를 이용한 공증 시 대리촉탁의 방법 규정(안 제38조의3 제4항 및 제5항 신설)

- 대리촉탁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등 송부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정공증인의 진행 거부 및 설명 의무 규정(안 제38조의3 제6항 신설)

- 화상장치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지정공증인이 인증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진행 거부 사유를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함

바. 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 지정(안 부칙 제2조 신설)

- 개정 공증인법 중 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 18. 3. 26.로 정하되, 화상공증 제도의 전면 실시에 앞서 법무부장관이 지정공증인을 선정하여 ' 18. 3. 26. 이전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78.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01. 09.

● 마감일자 : 2018. 01. 11.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실현에 소관 업무가 다수 연계되는 국토교통부를 4차산

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01. 10.

• 마감일자 : 2018. 02. 19.

-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7.10.3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및 투자자 전매제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 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7제4항제3호)

- 일반투자자가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한도를 최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함

*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동일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 17.10.31)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안 제1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71조의28제1항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 없이 클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

다. 거래제한기간 단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8조의17제6항)

- 법률 개정으로 클라우드펀딩 투자자의 거래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기존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의 거래제한 기간도 동일하게 6개월로 조정

80.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01. 10. • 마감일자 : 2018. 02. 19.
- 최저임금법 제5조2항 개정 따라 인용문구 등을 정비하고, 사문화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최저임금 감액(90% 지급) 대상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삭제
 - 나. 일반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은 현행과 동일한 10%로 규정(90% 지급)

8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2. 20.
- 규제개혁위원회의 2017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일몰주기가 2년인 것을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재검토형 규제사무의 일몰주기 변경(안 제28조)
 - 1) 규제개혁위원회의 2017년 도래 일몰규제 심사결과에 따라 일몰주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2) 규제의 재검토 일몰주기 2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변경하도록 함

8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2. 23.
-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 (2017.11.28. 법률 제15089호, 2018.11.29.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를 가스시설의 설계단계에 해당하는 기술검토 전에 받도록 합리화 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개정 후속 규칙 개정(안 제64조 및 별표 8)

-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 추가 및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규정

나. 안전성평가 수검 시기 합리화(안 제56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는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검

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확대(안 제70조제1항제9호)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으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포함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편의시설 설치 확대(안 별표 4)

- 충전소 내에 휴게음식점, 고객휴게실, 일반사무실 등 설치 허용

마. 액화석유가스 폐기용기 파기주체 일원화(안 별표 4 및 별표 6)

-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폐기대상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

바. 가스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상향(안 별표 8)

-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 미검사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및 세분화

8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2. 20.

○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사항 반영

필요, 그 밖에 현행 검사 징계 제도의 미비점 보완

- -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피청구인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취하 제도를 도입(안 제7조 제5항)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징계부가금 체납시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 및 의결방식 개선(안 제9조의2, 안 제18조)
- 검사 징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안 제17조)
- ‘불문’ 의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안 제7조 제5항, 안 제18조 제3항)

84.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2. 20.
-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하여 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법률 제14786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 1)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7조의2)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 2) 해양기상 관측망 구축 및 감시, 관측망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도 및 전문인력 양성, 관측기술개발, 특별관측, 유관기관과의 관측자료 공유 등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 3)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장소, 관측망 구축을 위한 절차, 관련기관

과의 협력, 기술개발 등 신설(안 제1조의3 신설)

나.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

- 1)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23조 제3항) 됨에 따라 국민 생활지원, 지역별 산업지원, 타분야 빅데이터와의 연계한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특화기상정보의 생산·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외국인 기상교육 대상자 기준 신설 등

- 1) 기상청장이 기상업무 관련 교육을 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종류, 교육대상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 개정)
- 2)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의2 신설)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라.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의6 신설)됨에 따라 기상과학관 전문직원에 관한 자격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3 신설)
- 2) 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6조의 7 신설)됨에 따라 기상박물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4 신설)

85.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2. 20.

- 기상현상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기상영향 예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법률 제14786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안개특보를 삭제 하는 등 기상특보를 변경하고, 기상영향 예보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 13조제2항)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8조)
- 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에 윈드시어를 추가하고, 항공예보를 제공하는 곳을 비행장에서 공항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상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35조의6) 됨에 따라 기상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 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대상을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로 국한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1조)
- 마. 업무의 위탁에 기후감시 및 기상과학관 운영,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지식 보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3조)

8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1. 31.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절차,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3조의2)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나.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3)

-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의 통보 시한 (안 제31조)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의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시한을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함.

라.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 (안 제31조의2제1항)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로 하고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함.

마.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의2)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정하고, 부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4조의3)

-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관할 시·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87.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2. 20.
-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 정의를 현실화하고,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기간을 개선하여 부품 국산화 개발을 장려하기 위함.
- 환율 정의를 실제 적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이나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개정하고, 수입부품의 국산화 개발 성공 시 수입가격 인정기간을 최장 15년 이내에서 계약년수 기준으로 5년 간 보장하도록 함.

88.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2. 20.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27호) 제4조 3항의 무관보의 계급을 ‘대령 이하’에서 ‘중령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무관보는 국방무관을 보좌하여 무관부의 실무행정을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방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관보의 계급을 영관급 최고계급인 대령에서 중령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同시행규칙 제10조 수석무관의 임무중 각 주재무관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조정’을 ‘통제’로 수정하고자 하는 바, 국방용어상 ‘통제’란 소속원의 임무수행 상태를 감독하고 임무수행간 발생하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조정, 협조, 통합하는 행위임. 따라서 용어 사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협조 및 조정’을 포괄하는 개념인 ‘통제’로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4조(무관보의 계급) : 대령 이하 → 중령 이하

나.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 협조 및 조정 → 통제

8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1. 15.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권익위원회 통합 이전 행정심판 기능을 주관하였던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도록 되어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변경(안 제6조 제2항)
 - 나.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변경(안 제8조 제2항)
 - 다. 불합리한 법령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조항 일부 삭제(안 제59조 제1항)

9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1. 15.
-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체성이 드러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새로운 기능과 조직에 부합되게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제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위원회 및 법률 제명 변경(안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58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체성이 잘 나타나면서 권익보호 기능도 포괄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개정함.

나. 위원회 설치목적은 부패방지 업무 중심으로 변경(안 제1조)

-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패예방과 부패행위 규제가 우선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잘 드러나도록 변경함.

다. 반부패 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법률의 장과 조항 순서를 변경(안 제3장, 제4장, 제5장, 제32조부터 제95조까지)

라. 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2조)

마. 행정심판 기능 분리에 따라 부위원장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상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조정(안 제13조제1항)

9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2. 23.

- 현재 대부를 받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호에 의하면 그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상환유예 기간 중 연리 2퍼센트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9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2. 23.

- 현재 대부를 받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금의 상환

을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호에 의하면 그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상환유예 기간 중 연리 2퍼센트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9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2. 23.

- 현재 대부를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4호에 의하면 그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상환유예 기간 중 연리 2퍼센트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9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2. 23.

- 현재 대부를 받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4호에 의하면 그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

환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상환유예 기간 중 연리 2퍼센트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9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01. 11.

● 마감일자 : 2018. 02. 20.

○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개선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의 내용 중 법률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

○ 주요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운영방안 마련(안 제11조2~7)

- 인증절차, 인증기업 지원, 인증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 규정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강화(안 제14조, 제16조의2~3, 제17조, 제18조)

- 민간위원 비중 상향조정 및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활성화

-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 및 운영방안 마련

다.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 관련 법률과 불일치 해소(안 제30조)

- 소비자기본법과 동일하게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를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장이 임명하도록 개정

라.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방법 마련(안 제38조)

- 공표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및 공표수단 등 규정

마.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 개선(안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통일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 삭제

96.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01. 12.

• 마감일자 : 2018. 02. 21.

○ 생물작용제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정비 차원에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수입허가 의제조항을 법률로 상향·신설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현행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안 제7조의2제3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병해충이 「생화학무기금지법」상 생물작용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

9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01. 12.

• 마감일자 : 2018. 02. 23.

○ 현행법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등의 경우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간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고,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과도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징수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선정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는 관리비등 내용, 관리비등 내역 청구·공개방법, 회계감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

한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업무를 자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리규정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관리규정의 제·개정방법 등 세부 내용과 표준관리규정에 포함될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안 제7조의4)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대규모점포등에 입점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법 제12조제2항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선정 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2) 2개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공동으로 영업하는 상인은 하나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3) 대리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동의권 행사방식을 구체화 함
- 4)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에 동의권 행사방법 등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관리비 내용 및 관리방법 등(안 제7조의5, 6)

- 1)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는 관리비등 내용을 세부화하고 관리비등 내역 청구·공개방법 등을 구체화함
- 2) 대규모점포등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용역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하도록 함

다. 입점상인의 열람대상 정보(안 제7조의7)

- 1) 입점상인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자료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규정

라. 회계감사 방법(안 제7조의8)

- 1) 감사기간, 감사대상 서류, 감사기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등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 방법을 세부 규정함

마. 관리규정의 제·개정 방법(안 제7조의9)

- 1)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대규모점포등관지자가 제정할 관리규정의 제정기한, 제·개정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

바. 표준관리규정(안 제7조의10)

- 1) 시·도지사가 마련·보급해야하는 표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사항을 규정함

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01. 12.

• 마감일자 : 2018. 02. 21.

-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 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17.10.31.)에 따라 자금조달거래 통합기준을 마련함

○ 주요내용

가. 거래통합기준 마련

-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발행 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목적하는 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99.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01. 12.

• 마감일자 : 2018. 02. 21.

-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징계정보의 공개 의무 및 열람·등사 신청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시험 영어성적 인정기관 추가(안 제2조제4항 별표3)

- 타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시험 영어과목 성적에 G-TELP 및 FLEX 성적도 인정
- 나. 공인회계사시험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반환액 확대(안 제7조 제2항)
 - 현행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던 것을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하도록 변경
- 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위원장 수 제한 완화(안 제25조)
 - 공인회계사회 회원수 증가 등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임원 중 부회장의 수 상한을 5인에서 7인으로 완화
- 라. 회계법인 등 조치·징계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방법·절차 규정(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조치·징계 정보를 금융위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는 회계법인 등의 조치·징계 정보 열람·등사 신청 가능하도록 함
- 마. 불필요해진 조문 삭제(안 제9조, 안 제37조제2항)
 -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공인회계사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과 금융위원장의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통보 규정이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10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01. 12.
- 마감일자 : 2018. 02. 21.
-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1193호, 2012.1.17. 공포, 법률 제14548호, 2017.1.17. 공포)되어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을 개축 또는 개량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고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을 정하는 한편,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 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철도횡단교량 개축·개량 지원대상 등(안 제60조의6)

- 국가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철도횡단교량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교량을 개축 또는 개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안 제48조의2)

-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 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로 규정함

1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01. 12.
- 마감일자 : 2018. 02. 21.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 관련 조사에 대한 관계 조사기관의 협조 의무를 상향입법하고,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02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조치 조사 협조 의무 규정 삭제(안 제15조)

- 법 제19조제5항에 보호조치 신청 관련 조사에 대한 관계 조사기관의 협조 의무를 상향입법 함에 따라 같은 내용의 제15조제3항을 삭제함

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의 점검(안 제19조)

- 1)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보호조치 확정 후 2년 간 6개월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 2)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기간 동안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보호 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조정(안 제21조)

- 관련 소송의 판결 이전에 공익신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함

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 상향(안 제22조)

- 공익신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안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3)

-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신설로 도입된 긴급 구조금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요건과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